

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창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94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 월 16일

발 의 자 : 김창원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정진술, 최웅식, 김평남, 정재웅,
박순규, 노승재, 홍성룡, 박기열,
성흠제 의원(9명)

1. 개정이유

시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에 민간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「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」 일부 개정('20.4.7.)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관리주체에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추가(안 제2조제6호다목).
- 성능개선 총당금의 적립 주체를 현행 시장에서 민간을 포함하는 관리주체로 확대하고, 공공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성능개선 총당금의 적립의무를 별도 명시함(안 제18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

제5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성능개선충당금 적립”을 “성능개선 충당금 적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시장은”을 “관리주체는”으로, ““서울특별시 성능개선충당금”(이하 “성능개선충당금”이라 한다)을 적립하여야 한다”를 “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3항제2호 중 “시”를 “관리주체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“관리주체”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가.·나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padding-right: 2em;"><신설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가.·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다. 「<u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</u>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</p>
<p>제5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<u>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은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5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<u>시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<u>성능개선충당금</u> 적립) ① <u>시장은</u>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“<u>서울특별시 성능개선충당금</u>”(이하</p>	<p>제18조(<u>성능개선충당금</u> 적립) ① <u>관리주체는</u> ----- ----- ----- <u>성능개선충당금</u>를 적립할 수 있다. 다만,</p>

“성능개선충당금“이라 한다)을
적립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성능개선충당금의 재원은 다음
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
2. 그 밖에 시 재정 운영 효율화를
통한 자금 등

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
하는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
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관리주체의 -----
